

<h1>보도자료</h1> <p>2021. 2. 5.</p>	 <h2>양형위원회</h2>	
	담당부서	운영지원단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판사 (☎ 02-3480-1924)

대법원 양형위원회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개최

대상: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 2. 5.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함

① 행사 개요

- 일시 : 2021. 2. 5. 14:00 ~ 17:4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 사회 :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 손철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지정토론자

[주거침입범죄]

- 김종구(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 최익구(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환경범죄]

- 류필무(환경부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범죄 부분]

- 이근우(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개요

- 2021. 1. 11. 배포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보도자료(첨부 자료) 참조
-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수정안)과 그 설명자료는 공청회 자료집 참조[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공개토론회' 탭 - '공청회'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지정토론문 원문은 공청회 자료집 참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공개토론회' 탭 - '공청회'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 공동범행을 가중인자로 하지 말고, **공동주거침입을 가중적 구성요건의 별도 유형으로 두자**는 의견(김종구 교수)
- ☞ 양형인자 중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예로 제시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에서 ‘실내 주거공간’을 ‘실내공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종구 교수)
- ☞ 양형인자 중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의 예로 제시된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서의 ‘범죄’를 성범죄와 기타 범죄로 구분하자는 의견(김종구 교수)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감경인자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김종구 교수)
- ☞ **주거신체수색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최익구 변호사)
- ☞ 특별감경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예시규정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최익구 변호사)
- ☞ 특별가중인자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의 예시규정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는 일반가중인자로 위상을 **변경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최익구 변호사)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화학물질 안전 법률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류필무 담당관)
- ☞ 폐기물 범죄의 **가중형량은 법정형까지 높이고 이득액은 특별양형인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류필무 담당관)
- ☞ 환경오염 발생 정도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류필무 담당관)
- ☞ **대기·수질오염물질, 가축분뇨의 배출량과 범행기간을 특별양형인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류필무 담당관)
- ☞ 환경범죄에서는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정남순 변호사)
-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기타 행정명령 위반행위 역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정남순 변호사)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 ☞ 특별양형인자인 ‘동종 누범’이나 ‘내부고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근우 교수)
- ☞ 특별감경인자로 ‘사업주(법인) 등이 의지를 가지고 작업환경 개선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반영하자는 의견(이근우 교수)
- ☞ 특별가중인자에서 의무위반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서 반복 발생의 판단 단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근우 교수)
- ☞ **법인 기업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전형배 교수)
- ☞ 강화된 양형기준이 결국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변질되지 않을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염려가 된다는 의견(전형배 교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전형배 교수)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주거침입 양형기준안 관련 일반 방청인 의견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야간에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사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야간에 침입한 것이 평온 침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일반 방청인 의견**

- 환경범죄로 국제적 수준에 이르는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 민주노총 측 의견(방청인 의견으로 제출)**

- 기업이 인력, 예산 및 작업 매뉴얼 위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는 가중요인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경우에 말단관리자나 노동자에게는 감경요인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4개 의견 제시

5 **향후 일정**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2021. 3. 29. 제10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